건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 제55호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경제문화국장		
제출연윌일	2023. 4. 11.		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55호 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체육진흥과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에서 정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지워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.(안 제5조의2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2692(2023. 3. 15.)호]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복지정책과-9171(2023. 3. 20.)호]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2846(2023. 3. 8.)호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3. 7. ~ 2023. 3. 27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체육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- 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
- 2.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
- 3.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	명
입	체 육	진 흥 고	가 장	김	일	규
안	체 육	정 책 팀	팀 장	정	재	ਸੂਲ
자	담	당	자	o] (74	도 6-57	영 5 2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)	제5조(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	<u><삭 제></u>
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	
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	
<u>다.</u>	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
	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
	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
	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
	를 지원하여야 한다.
	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
	2.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
	3.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
	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
	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	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에
	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
	<u>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</u> 병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자
	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.
	<u> </u>

붙임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O 세출
 - 제5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2. 비용추계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
 - O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 - 나. 추계 결과
 - O 세출
 - 논산시체육회 : 260,000천원

(인건비 200,000천원, 사무관리비 60,000천원)

- 논산시장애인체육회 : 170,029천원

(인건비 129,625천원, 사무관리비 40,404천원)

- 다. 재원조달방안
 - O 시비 100%
- 3. 작성자

체육진흥과장 김일 규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=	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	입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시	刊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세	芝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운	민간단체법정 명비 보조 세육회 운영비	260,000	265,200	270,504	275,914	281,432	1,353,050
운 ⁽ 논산시	민간단체법정 경비 보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	170,029	173,430	176,898	180,436	184,045	884,838
재	원 조달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الد اح	소 계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자체 수입	지방세	430,029	438,630	447,402	456,350	465,477	2,237,888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7	기 금						
공기역	겁 특별회계						
<i>기</i>] 타 부담, 민자 등						

[※]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 상승에 따른 2%(년) 상승분 반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